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대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 [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H)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대신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07.2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03.02.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rust & Harmony

대신자산운용
Daishin Asset Management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Trust & Harmony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자산운용
Daishin Asset Management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H) [주식]	79310
A	79311
C1	79312
C2	94084
C-e	7931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투자대상"과"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ditm.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Trust & Harmony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H) [주식]	79310
A	79311
C1	79312
C2	94084
C-e	793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8.04.28	최초설정
2009.02.03	운용전문인력 변경
2009.04.10	운용전문인력 변경
2009.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
2010.03.16	매입시 적용 기준가 변경, 결산 유보기준 신설
2010.04.01	책임운용전문인력변경
2010.05.03.	판매보수 변경(인하)
2010.07.27.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및 임의해지사항 변경
2011.03.02.	신탁업자변경(도이치은행서울지점->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대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우.150-884) ☏ 02-769-3233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 펀드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Trust & Harmony

해외위탁운용사	UOB(United Overseas Bank)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운용지시,조사분석업무,단순매매주문업무

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UOB(United Overseas Bank) Asset Management
설립일	1986년 1월 17일
회사주소	UOB(United Overseas Bank) Asset Management Ltd. Co. 80 Raffles Place, UOB Plaza 2, Singapore 048624 전화번호:(65)-6222-2228 팩스:(65)-6532-386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0.07.20. 현재)

①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왕상일	1978	선임 운용역	8개	410억	2003년 美미네소타대학교 통계학/수학과 졸 2006년 대신증권㈜ 입사 2007년 대신증권㈜ PI부 2008년 (현)대신자산운용(주) 글로벌사업본부 2010년 (현)대신자산운용(주) 대안투자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대안투자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 •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②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신민수	2008.04.28 ~ 2009.02.02
허숭구	2009.02.03 ~ 2009.04.09
나상혁	2009.04.10 ~ 2010.03.31
왕상일	2010.04.01 ~ 현재

주1) 2010.07.20.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Mr. Thio Boon Kiat(CIO) (2010.03.02 기준)
운용자산규모	55.7 백만 달러
과거 운용경력	- 다수의 최우수 싱가폴투자펀드상 수상 - 싱가폴투자청 특별투자팀 수석 펀드매니저 역임 - 1994년 UOB Asset Management 입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Trust & H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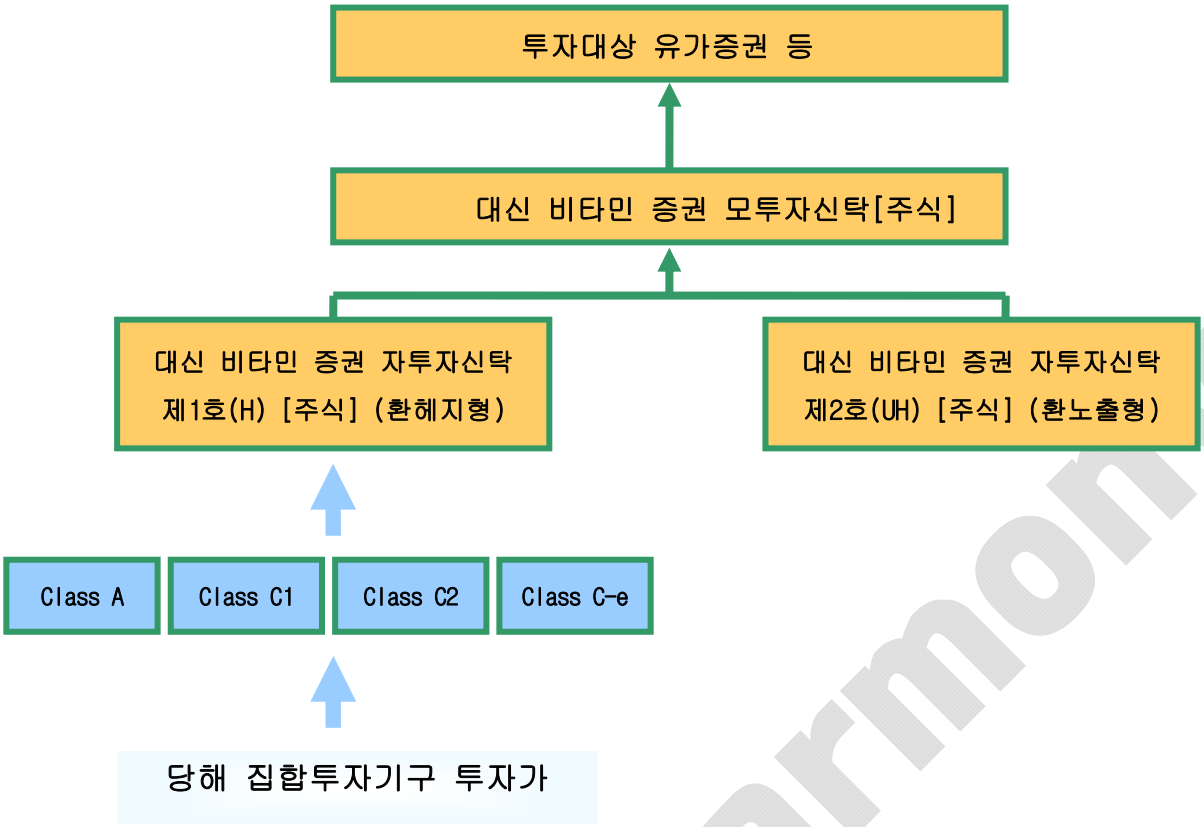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에 관한 사항]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투자대상	해외주식 60%이상
	투자목적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에 주된 수익 또는 자산기반을 보유한 기업이 발행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지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거나 상장예정인 해외주식 등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분산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임. - 현물지분증권투자에 따른 포지션헤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수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할 계획임. - 모집합투자기구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의 투자는 업무위탁사로서 싱가포르 UOB은행의 계열운용사인 UOB Asset Management에서 수행할 계획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중 자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을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투자된 자금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이 발행하고 이 4개 국가 및 싱가포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거나 상장예정인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지분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

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 법 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교지수 : MSCI ASEAN(“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조절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가중평균지수”)
X 90% + Call Rate X 1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이 발행하고 이 4개 국가 및 싱가포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거나 상장예정인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지분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중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자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모집합투자기구	100%이하	-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통화관련 장내·장외파생상품	-	- 통화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통화스왑션 등)으로서 외화자산총액 이내에서 헤지목적으로만 투자
단기대출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양도성예금증서	-	
기타	-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 규약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외국주식	60%이상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Ust & Harmony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지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구온난화 완화섹터(하부산업 :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지구온난화 적응섹터(하부산업 : 물기반시설산업, 해안기반시설산업,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 산업, 건축기반시설산업)·지구온난화 대응섹터(하부산업 : 재난구조산업, 재난복구산업)에 속하는 외국법인이 발행하고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
채권	40%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화증권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기준)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외국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수익증권	5%이하	-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법제110조의 수익증권, 법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ETF	30%이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단기대출	-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 예치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양도성예금증서	-	
기타	-	-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st & Harmony

투자비율 적용예외	- 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파생상품)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신용평가등급 AA(-) 미만인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Light & Harmony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 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초과하는 행위	최초설립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용평가등급 AA(-) 미만인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분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환위험관리

Just & Harmony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90%수준) 투자하고 나머지 유동성 자산은 채권,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에 주된 수익 또는 자산기반을 보유한 기업이 발행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지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거나 상장 예정인 외국지분증권 등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분산하여 투자운용할 계획입니다.

(2) 현물주식투자에 따른 포지션헤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수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할 계획입니다.

(3) 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은 싱가포르 UOB은행의 계열운용사인 UOB Asset Management에 위탁운용되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위탁운용사인 UOB Asset Management와의 정기적인 전화회의를 통하여 과거 운용성과 및 향후 운용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 후 시장의 변동에 대처합니다.

(5)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환위험 관리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모집합투자기구 표시통화인 미국달러화 대비 자집합투자기구 표시통화인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자집합투자기구차원에서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비율 : 90%±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해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화와 모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지역의 현지통화간 환헤지는 별도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주로 미국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나. 수익구조

-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참고) 펀드내 외화표시자산의 구성 (2010년 3월 4일 현재)

① 국가별 분포

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유동성
비중	50%	27%	12%	0%	11%

② 산업별 분포

Trust & Harmony

구분	소비재	금융	유틸리티	다각적 사업	통신 서비스	산업재	에너지	기타	유동성
비중	20%	16%	11%	7%	5%	5%	2%	24%	1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당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기구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모집합투자기구 표시통화인 미국달러화 대비 자집합투자기구 표시통화인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자집합투자기구차원에서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비율: 90%±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

Soft & Harmony

	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흥시장위험	당해 집합투자기구재산이 투자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의 관련기업은 신흥시장에 포함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회계, 감사, 재무보고 관련 기준이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어 간혹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근대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는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 몰수, 세금징수, 외국환 규제, 정치적 변화, 정부규제, 사회적 불안정, 외교 발전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의 위험,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 사회의 불확실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기구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주식시장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Trust & Harmony

	본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환매'의 '(7)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이 발행하고 이 4개 국가 및 싱가포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거나 상장예정인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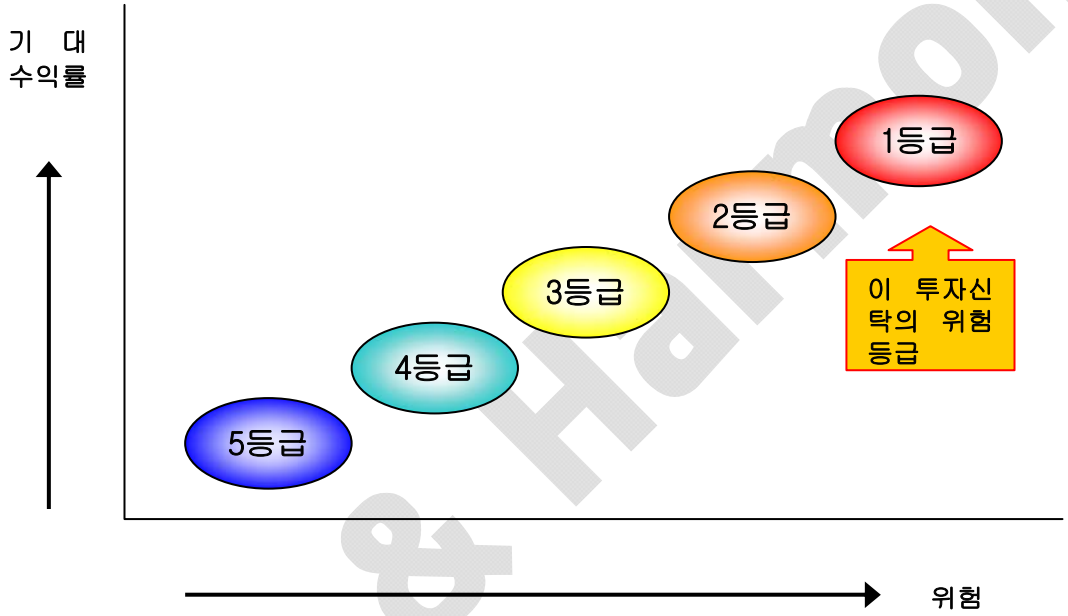

< 대신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 세 설 명
1등급	매우높은 위 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추구형 제외)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특정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형 및 파생형)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4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4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Trust & Harmony

		- 절대수익추구형 투자신탁(주식 매입금의 90% 이상 헤지하는 투자신탁) - 구조화된 파생형 증권투자신탁(원금보존추구형)
4등급	낮은위험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등급	매우낮은 위 험	- MMF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17시(오후5시)이전	자금납입영업일----------**판매기준가격**
17시(오후5시)경과후	자금납입영업일----------**판매기준가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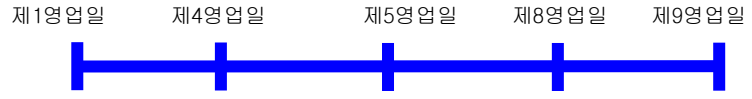

17시(오후5시)이전	환매청구일--**환매적용기준가격**---------**환매대금수령일**
17시(오후5시)경과후	환매청구일----------**환매적용기준가격**--------**환매대금수령일**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Trust & Harmony

구 분	부 담 비 율				비고
	클래스A	클래스C1	클래스C2	클래스C-e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7영업일 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Trust & Harmony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ditm.co.kr)·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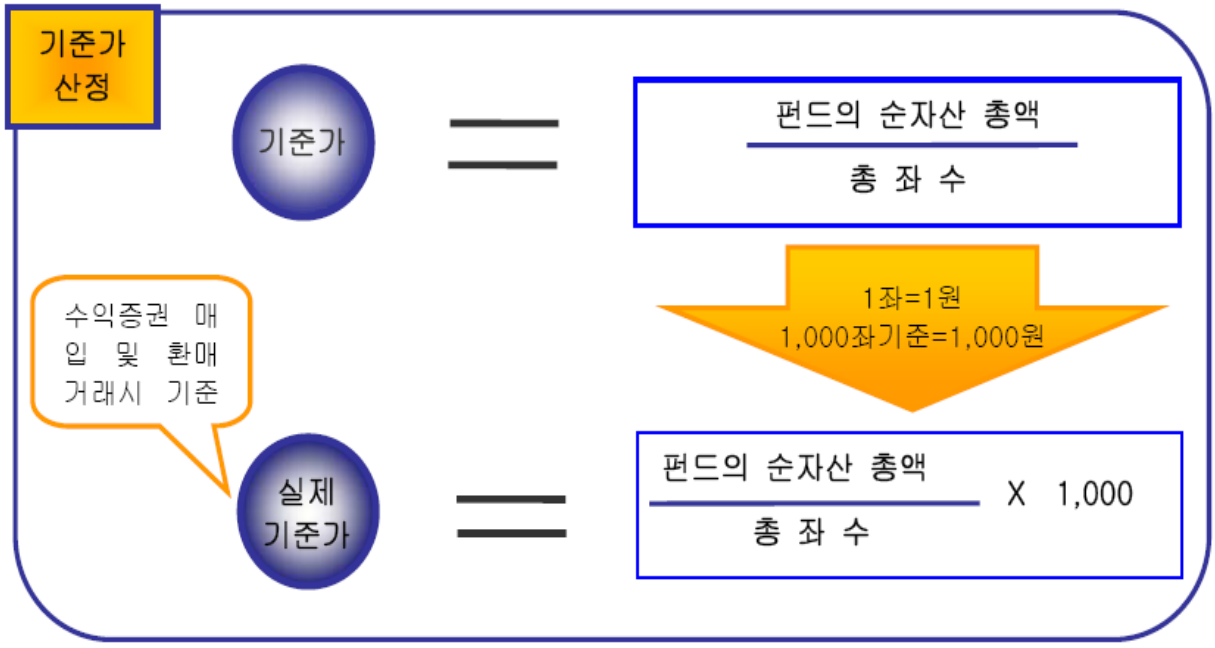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지분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지분증권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

	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⑧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⑨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사장에서 거래된 최종가격
⑩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9조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이 발표하는 가격
⑪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e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수수료 현황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e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e	
집합투자업자		연 1.0000%	연 1.0000%	연 1.0000%	연 1.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2010.05.03 ~ 2011.05.02	연 0.9000%	연 1.7000%	연 1.4000%	연 1.5000%	

	2011.05.03 ~ 2012.05.02		연 1.5000%	연 1.2000%	연 1.3000%	후급
	2012.05.03 ~ 2013.05.02		연 1.3000%	연 1.0000%	연 1.1000%	
	2013.05.03 이후		연 1.1000%	연 0.8000%	연 0.9000%	
신탁업자		연 0.0600%	연 0.0600%	연 0.0600%	연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200%	연 0.0200%	연 0.0200%	연 0.0200%	
기타비용		연 0.0055%	연 0.0000%	연 0.0000%	연 0.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2010.05.03 ~ 2011.05.02	연 1.9855%	연 2.7800%	연 2.4800%	연 2.5800%	
	2011.05.03 ~ 2012.05.02		연 2.5800%	연 2.2800%	연 2.3800%	
	2012.05.03 ~ 2013.05.02		연 2.3800%	연 2.0800%	연 2.1800%	
	2013.05.03 이후		연 2.1800%	연 1.8800%	연 1.9800%	
총보수·비용비율 [2]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2010.05.03 ~ 2011.05.02	연 2.4309%	연 3.2542%	연 2.9542	연 3.0516%	
	2011.05.03 ~ 2012.05.02		연 3.0542%	연 2.7542	연 2.8516%	
	2012.05.03 ~ 2013.05.02		연 2.8542%	연 2.5542	연 2.6516%	
	2013.05.03 이후		연 2.6542%	연 2.3542	연 2.4516%	
증권 거래비용		연 1.5330%	연 1.5446%	연 1.5446%	연 1.4587%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9.04.28 ~ 2010.04.27]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9.04.28 ~ 2010.04.27]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클래스 A	349	866	1,410	2,893
클래스 C1	334	955	1,537	3,111
클래스 C2	303	888	1,461	3,163
클래스 C-e	313	893	1,434	2,910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

Trust in Harmony

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현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2	Class C-e	
판매회사	2010.05.03 ~ 2011.05.02	연 0.9000%	연 1.7000%	연 1.4000%	연 1.5000%	
	2011.05.03 ~ 2012.05.02		연 1.5000%	연 1.2000%	연 1.3000%	
	2012.05.03 ~ 2013.05.02		연 1.3000%	연 1.0000%	연 1.1000%	
	2013.05.03 이후		연 1.1000%	연 0.8000%	연 0.9000%	
집합투자업자		연 1.0000%	연 1.0000%	연 1.0000%	연 1.0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연 0.9000%	연 1.9000%	연 1.6000%	연 1.7000%	
신탁업자		연 0.0600%	연 0.0600%	연 0.0600%	연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		연 0.0200%	연 0.0200%	연 0.0200%	연 0.0200%	
기타비용		연 0.0000%	연 0.0000%	연 0.0000%	연 0.0000%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2010.05.03 ~ 2011.05.02	연 1.9800%	연 2.7800%	연 2.4800%	연 2.5800%	
	2011.05.03 ~ 2012.05.02		연 2.5800%	연 2.2800%	연 2.3800%	
	2012.05.03 ~ 2013.05.02		연 2.3800%	연 2.0800%	연 2.1800%	
	2013.05.03 이후		연 2.1800%	연 1.8800%	연 1.9800%	
총보수·비용 비율[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2010.05.03 ~ 2011.05.02	연 2.4368%	연 3.4386%	연 3.1386%	연 3.2386%	
	2011.05.03 ~ 2012.05.02		연 3.2386%	연 2.9386%	연 3.0386%	
	2012.05.03 ~ 2013.05.02		연 3.0386%	연 2.7386%	연 2.8386%	
	2013.05.03 이후		연 2.8386%	연 2.5386%	연 2.6386%	
증권 거래비용		연 2.1927%	연 1.4124%	연 1.4124%	연 1.4124%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또한,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비용을 표기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합계는 기타비용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

Trust & Harmony

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Trust & Harmony

※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1월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Trust & Harmony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2009.04.28 - 2010.04.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 기(2008.04.28 - 2009.04.2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1) 자1 (모)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2010.04.27)	제 1 기 (2009.04.27)	
운용자산	1,499,787,868	1,354,159,519	
증권	1,373,728,710	1,197,110,384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126,059,158	157,049,135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10,890,653	97,414	
자산총계	1,510,678,521	1,354,256,933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4,928,000	14,946,590	
부채총계	4,928,000	14,946,590	
원본	1,253,926,887	1,837,098,231	
수익조정금	-209,781,837	63,875,657	
이익잉여금	461,605,471	-561,663,545	
자본총계	1,505,750,521	1,339,310,343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2009.04.28 - 2010.04.27)	제 1 기 (2008.04.28 - 2009.04.27)	
운용수익	802,504,577	-560,789,535	
이자수익	1,568,872	5,083,232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800,935,705	-565,872,767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1,129,800	873,00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1,129,800	873,000	
기타비용	0	1,010	
당기순이익	801,374,777	-561,663,545	

Trust & Harmony

매매회전율	0.00	0.00	

2)Class A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0.04.27)	(2009.04.27)	
운용자산	1,480,265,967	1,294,489,121	
증권	1,480,265,967	1,294,489,121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1,480,265,967	1,294,489,121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6,683,173	5,685,856	
부채총계	6,683,173	5,685,856	
원본	1,277,008,447	1,805,482,146	
수익조정금	-183,633,991	48,402,752	
이익잉여금	380,208,338	-565,081,633	
자본총계	1,473,582,794	1,288,803,265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09.04.28 - 2010.04.27)	(2008.04.28 - 2009.04.27)	
운용수익	778,050,985	-537,796,793	
이자수익	0	0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778,050,985	-537,796,793	
기타수익	38,983	0	
운용비용	32,020,650	26,918,554	
관련회사 보수	32,020,650	26,918,554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416,629	366,286	
당기순이익	745,652,689	-565,081,633	
매매회전율	0.00	0	

3)ClassC1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0.04.27)	(2009.04.27)	
운용자산	24,022,821	43,368,827	

Trust & Harmony

증권	24,022,821	43,368,827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24,022,821	43,368,827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163,008	278,032	
부채총계	163,008	278,032	
원본	21,092,559	61,002,258	
수익조정금	-12,170,412	7,118,461	
이익잉여금	14,937,666	-25,029,924	
자본총계	23,859,813	43,090,795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09.04.28 - 2010.04.27)	(2008.04.28 - 2009.04.27)	
운용수익	22,402,127	-23,411,963	
이자수익	0	0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22,402,127	-23,411,963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1,262,920	1,607,270	
관련회사 보수	1,262,920	1,607,27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8,349	10,691	
당기순이익	21,130,858	-25,029,924	
매매회전율	0.00	0	

4)Class Ce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0.04.27)	(2009.04.27)	
운용자산	1,461,733	1,452,395	
증권	1,461,733	1,452,395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0	0	

Trust & Harmony

자산총계	1,461,733	1,452,395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9,120	8,780	
부채총계	9,120	8,780	
원본	1,277,290	2,037,299	
수익조정금	-308,715	-105,286	
이익잉여금	484,038	-488,398	
자본총계	1,452,613	1,443,615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09.04.28 - 2010.04.27)	(2008.04.28 - 2009.04.27)	
운용수익	921,665	-454,789	
이자수익	0	0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921,665	-454,789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65,204	33,609	
관련회사 보수	65,204	33,609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211	0	
당기순이익	856,250	-488,398	
매매회전율	0.00	0	

Trust & Harmony

나. 대차대조표

1) 자1 (모)

(단위: 원)

과 목	제2기(2010.04.27)		제1기(2009.04.2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26,059,158		157,049,135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9,111,228		87,084,349			
2. 예치금						
3. 증거금	96,947,930		69,964,786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373,728,710		1,197,110,384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373,728,710		1,197,110,384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0,890,653		97,414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9,485		97,414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0,851,168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510,678,521		1,354,256,933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56,751,634		14,946,59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4,928,000		1,050,000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251,823,634		13,896,59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56,751,634		14,946,590		0
자 본						
1. 원 본	1,253,926,887		1,837,098,23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0		-497,787,888			
(발행좌수 당기: 1,253,926,887 좌						
전기: 1,837,098,231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729.04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1,253,926,887		1,339,310,343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10,678,521		1,354,256,933		0

2)Class A

(단위: 원)

과 목	제2기(2010.04.27)		제1기(2009.04.2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480,265,967		1,294,489,121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480,265,967		1,294,489,121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480,265,967		1,294,489,121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03,257,520		5,685,856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6,683,173		5,685,856			
5. 기타미지급금	196,574,347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03,257,520		5,685,856		0
자 본						
1. 원 본	1,277,008,447		1,805,482,14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0		-516,678,881			
(발행좌수 당기: 1,277,008,447 좌						
전기: 1,805,482,146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713.83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1,277,008,447		1,288,803,265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80,265,967		1,294,489,121		0

3)Class C1

(단위: 원)

과 목	제2기(2010.04.27)		제1기(2009.04.2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4,022,821		43,368,827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4,022,821		43,368,827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4,022,821		43,368,827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930,262		278,032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163,008		278,032			
5. 기타미지급금	2,767,254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930,262		278,032		0
자 본						
1. 원 본	21,092,559		61,002,258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0		-17,911,463			
(발행좌수 당기: 21,092,559 좌						
전기: 61,002,258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706.38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21,092,559		43,090,795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4,022,821		43,368,827		0

4)Class C-e

(단위: 원)

과 목	제2기(2010.04.27)		제1기(2009.04.27)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0		0		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461,733		1,452,395		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461,733		1,452,39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0		0		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461,733		1,452,395		0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84,443		8,78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9,120		8,780			
5. 기타미지급금	175,323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84,443		8,780		0
자 본						
1. 원 본	1,277,290		2,037,29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0		-593,684			
(발행좌수 당기: 1,277,290 좌						
전기: 2,037,299 좌						
전전기: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708.59 원						
전전기: 원)						
자 본 총 계		1,277,290		1,443,615		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61,733		1,452,395		0

다. 손익계산서

1)자1 (모)

(단위: 원)

과 목	제2기(2009.04.28-2010.04.27) 금 액		제1기(2008.04.28-2009.04.27)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568,872		5,083,232		0
1. 이 자 수 익	1,568,872		5,083,232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306,771,716		1,105,349,698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645,710,000		800,545,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87,784,076		23,600,000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573,277,640		281,204,69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06,965,811		1,672,095,465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97,847,800		1,046,378,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198,396,590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9,118,011		427,320,875			
운 용 비 용		0		1,010		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01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801,374,777		-561,663,545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639092108		-0.305734084		

Trust &

2)Class A

(단위: 원)

과 목	제2기(2009.04.28-2010.04.27)		제1기(2008.04.28-2009.04.2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8,983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38,983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78,112,148		78,039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78,112,148		78,039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1,163		537,874,832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61,163		537,874,832			
운 용 비 용		32,437,279		27,284,840		0
1. 운용수수료	16,337,162		13,734,056			
2. 판매수수료	14,703,417		12,360,609			
3. 수탁수수료	980,071		823,88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16,629		366,286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45,652,689		-565,081,633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583905839		-0.312981014		

Trust &

3)Class C1 (단위: 원)

과 목	제2기(2009.04.28-2010.04.27)		제1기(2008.04.28-2009.04.2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0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2,402,128		0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2,402,12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		23,411,963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		23,411,963			
운 용 비 용		1,271,269		1,617,961		0
1. 운용수수료	426,609		542,931			
2. 판매수수료	810,887		1,031,914			
3. 수탁수수료	25,424		32,42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8,349		10,69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1,130,858		-25,029,924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1.001815759		-0.410311435		

Trust &

4)Class C-e (단위: 원)

과 목	제2기(2009.04.28-2010.04.27) 금 액		제1기(2008.04.28-2009.04.27)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0		0		0
1. 이 자 수 익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21,665		13		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921,665		13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0		454,802		0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454,802			
운 용 비 용		65,415		33,609		0
1. 운용수수료	23,637		12,160			
2. 판매수수료	40,302		20,845			
3. 수탁수수료	1,265		604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1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856,250		-488,398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6703646		-0.23972818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자1(모)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4.28 - 2010.04.27	18	13	0	0	6	7	13	13
2008.04.28 - 2009.04.27	0	0	21	21	3	2	18	1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Class 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4.28 - 2010.04.27	18	13	0	0	5	6	13	13
2008.04.28 - 2009.04.27	0	0	20	20	2	1	18	1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Class C1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4.28 - 2010.04.27	1	0	0	0	0	0	0	0
2008.04.28 - 2009.04.27	0	0	1	1	0	0	1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Class 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4.28 - 2010.04.27	0	0	0	0	0	0	0	0
2008.04.28 - 2009.04.27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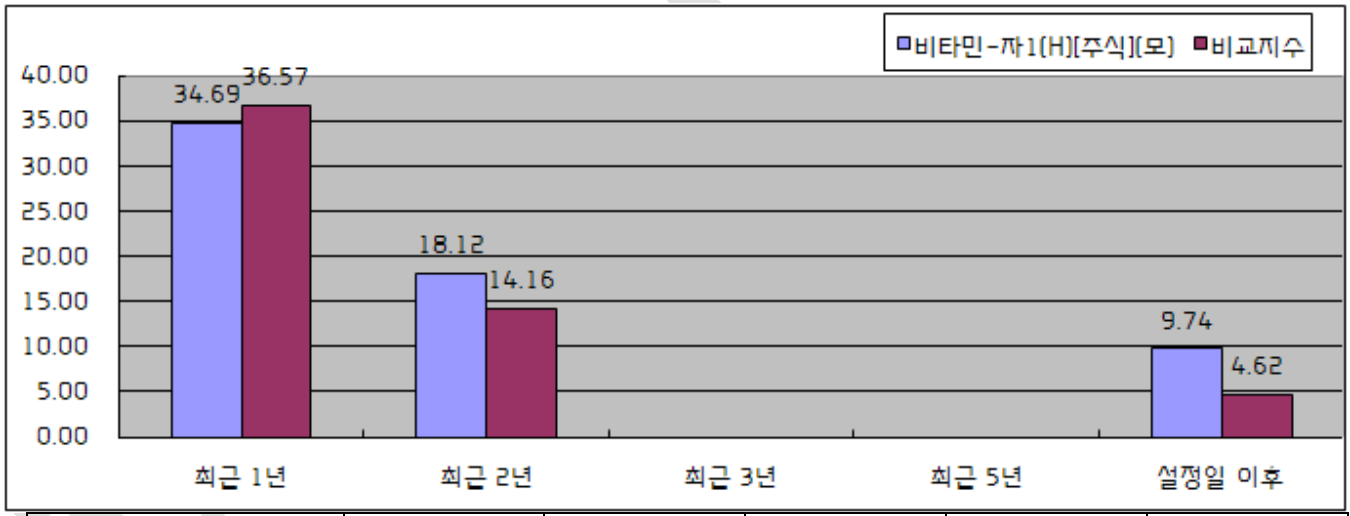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9.07.21 ~10.07.20	08.07.21 ~10.07.20			08.04.28 ~10.07.20
비타민-자1(H)[주식](모)	34.69	18.12			9.74
비교지수	36.57	14.16			4.62
비타민-자1(H)[주식]A	32.17	15.82			7.60
비교지수	36.57	14.16			4.62

비타민-자1(H)[주식]C1	30.97	14.71			6.57
비교지수	36.57	14.16			4.62
비타민-자1(H)[주식]Ce	31.26	15.00			6.85
비교지수	36.57	14.16			4.62

(주 1) 비교지수 : (0.9 * MSCI ASEAN("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조절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가중평균지수")]) + (0.1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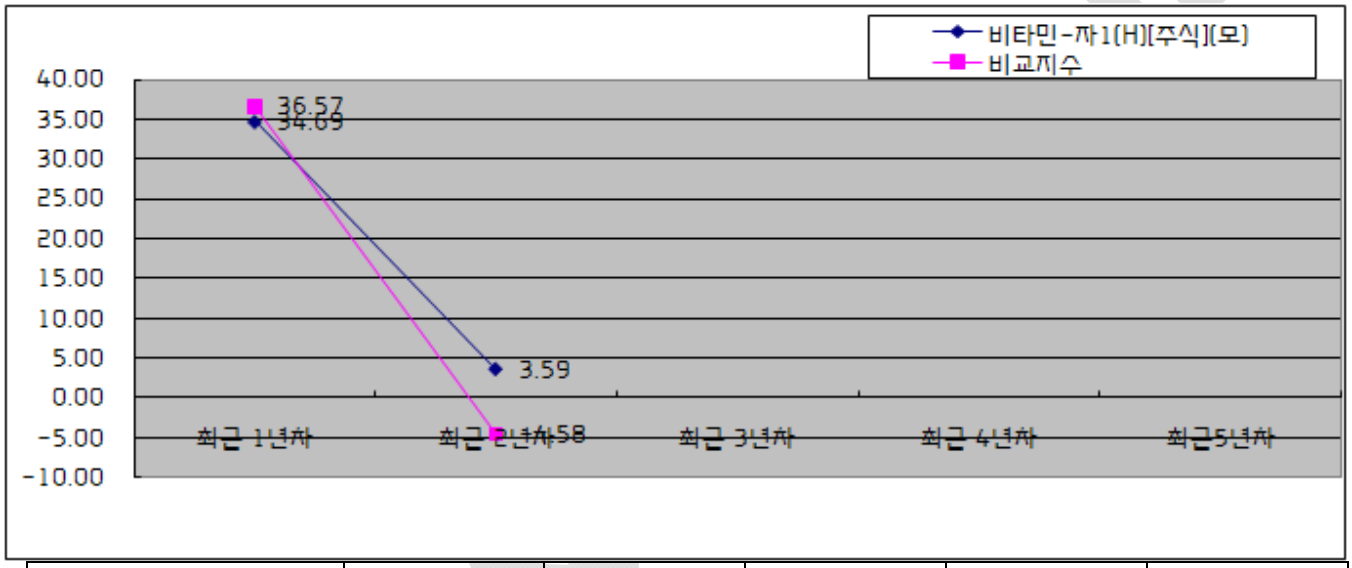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09.07.21 ~10.07.20	08.07.21 ~09.07.20	08.04.28 ~08.07.20		
비타민-자1(H)[주식](모)	34.69	3.59			
비교지수	36.57	-4.58			
비타민-자1(H)[주식]A	32.17	1.50			
비교지수	36.57	-4.58			
비타민-자1(H)[주식]C1	30.97	0.47			
비교지수	36.57	-4.58			
비타민-자1(H)[주식]Ce	31.26	0.75			
비교지수	36.57	-4.58			

(주 1) 비교지수 : (0.9 * MSCI ASEAN("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조절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가중평균지수")) + (0.1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종류형펀드의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 및 그래프는 종류형 모펀드 기준입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TrustOn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0.04.27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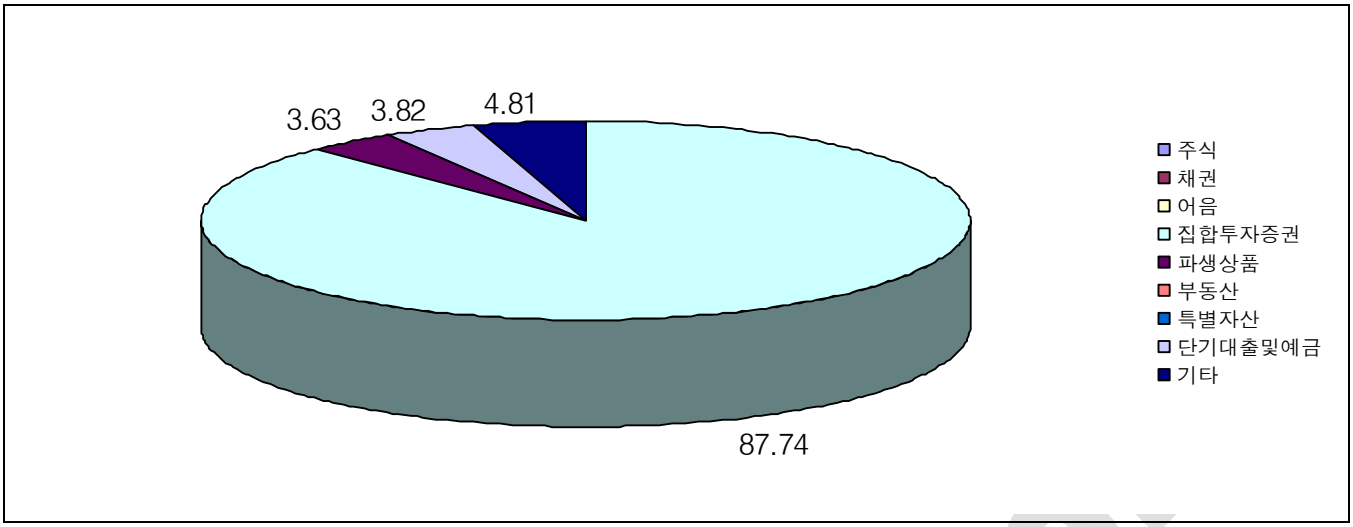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4	1	0	0	0	0	0	0	15
	(0.00)	(0.00)	(0.00)	(91.59)	(6.46)	(0.00)	(0.00)	(0.00)	(0.00)	(1.94)	(0.00)	(99.00)
USD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1.00)
합계	0	0	0	14	1	0	0	0	0	0	0	15
	(0.00)	(0.00)	(0.00)	(90.93)	(6.42)	(0.72)	(0.00)	(0.00)	(0.00)	(1.93)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Trust & Partnership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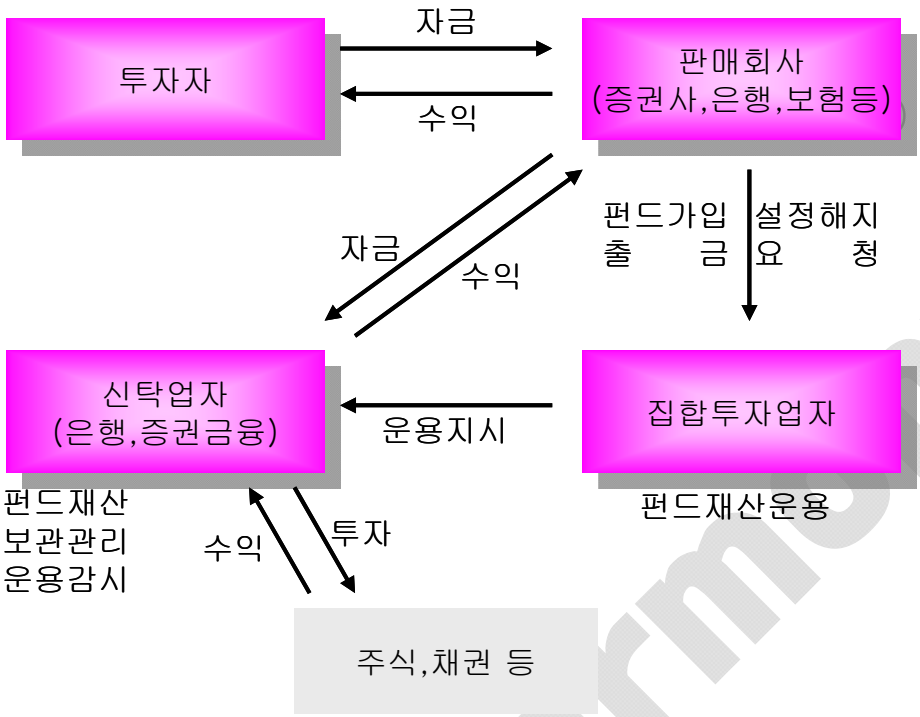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대신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빌딩5층 (연락처 : 02-769-3233, www.ditm.co.kr)
회사 연혁	1988. 3 대신투자자문㈜ 설립 (납입자본금 10억원) 1988. 4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1996. 6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1996. 7 대신투자신탁운용㈜로 상호변경 1997. 7 투자신탁운용업 허가(주식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7. 7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1999.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겸영 인가(재정경제부) 2009. 6 140억 증자(납입자본금 440억) 2009. 8 280억 감자(납입자본금 160억) 2010. 5 대신자산운용㈜로 상호변경
자본금	160억
주요주주현황	대신증권㈜ (100 %)

* 2010.07.20. 기준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Trust & Harmony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계정과목	2010.03.31	2009.03.31	계정과목	09.04.01 ~ ~ 10.03.31	08.04.01 ~ ~ 09.03.31
현금 및 예치금	368	329	영업수익	55	62
유가증권	-	-			
대출채권	2	2			
유형자산	1	1	영업비용	65	58
기타자산	83	65			
자산총계	454	397	영업이익	-9	5
예수부채	-	-	영업외수익	4	-
기타부채	178	2	영업외비용	417	-
부채총계	178	2	경상이익	-422	5
자본금	160	300	법인세비용	-24	2
자본잉여금	419	-			
이익잉여금	-303	95			
자본총계	276	397	당기순이익	-398	3

라. 운용자산 규모(2010.07.20. 현재 / 억원)

구분	증 권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산파생	MMF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525	4,040	1,962	1,967	271	361	1,982	0	2,734	14,84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True & Harmony

해당 펀드	대신 비타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UOB(United Overseas Bank) Asset Management
업무위탁범위	운용업무,운용지시,조사분석업무,단순매매주문업무

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UOB(United Overseas Bank) Asset Management
설립일	1986년 1월 17일
회사주소	UOB(United Overseas Bank) Asset Management Ltd. Co. 80 Raffles Place, UOB Plaza 2, Singapore 048624 전화번호:(65)-6222-2228 팩스: 팩스:(65)-6532-3868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 1588-1599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scfirst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0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Trust & Harmony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기구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쳐빌딩 4층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npricing.co.kr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Trust & Harmony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악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해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Trust & Harmony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Trust & Harmony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Trust & Harmony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으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Trust & Harmony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Trust & Harmony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dit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최근 1년)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Trust & Harmony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Trust & Harmony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Art & Harmony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투자금융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Trust & Harmony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H)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 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대신 비타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H)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신자산운용
Daishin Asset Management

Trust & Harmony